

신구대 조표

규정명 :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칙		비고
현행	제·개정(안)	
<p>제2조(교육목표) 본교는 북한이탈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에게 중등 교육(중고등학교 과정) 및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함을 교육목표로 한다.</p> <p>제4조(위치) 본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(신호동)에 둔다.</p>	<p>제2조(교육목표) 본교는 북한배경학생(북한이탈청소년, 제3국출생, 국내출생)에게 중등교육(중고등학교 과정) 및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함을 교육목표로 한다.</p> <p>제4조(위치) 본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사로 76번길 71(신호동)에 둔다.</p>	
<p>제8조(학급수) 학급수는 남, 여 공학으로 전 학급을 4학급으로 하되, 학년당 학급수는 학생 모집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학생정원)</p> <p>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5명 내외로 총 20명으로 한다.</p> <p>② 한 학년의 학생 정원수는 학교운영을 고려해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학급수)</p> <p>① <u>본교의 학급수는 남녀 공학으로 전 학급을 4학급으로 하되, 학생 모집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본교의 중·고등학교 과정은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며, 학급 편성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학생정원)</p> <p>① <u>본교의 학생정원은 총 20명으로 한다(단, 5%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).</u></p> <p>② <u>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5명 내외로 편성하되,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정원은 통합 정원제로 운영하며, 총 정원(20명)이내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정원을 학교장이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한학년의 학생 정원수는 학교운영을 고려해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.</u></p>	
<p>제11조(교과·수업일수)</p> <p>① 교육과정은 교과(군)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한다.</p> <p>② 교과는 보통 교과와 대안(교양) 교과로 한다.</p> <p>③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(군)는 국어, 사회(역사 포함)/도덕, 수학, 과학/기</p>	<p>제11조(교과·수업일수)</p> <p>① ~ ④ <변동 없음></p>	

규정명 :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칙		비고
현행	제·개정(안)	
<p>술·가정/정보, 체육, 예술(음악/미술), 영어, 대안(교양)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대안 선택과목 편성으로 한다.</p> <p>④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(군)는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편성하며 공통 과목은 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통합사회, 통합과학(과학탐구실험 포함), 기술·가정, 대안(교양)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대안 선택과목 편성으로 한다.</p> <p>⑤ <u>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, 동아리 활동, 봉사활동, 진로활동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수업일수는 대안법 제 8조에 의거해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.</p> <p>제12조(교외체험학습)</p> <p>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(교외)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.</p> <p>② 학교장은 친·인척 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, 도·농간 체험학습 등의 (교외)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(교외)체험학습 신청서와 계획서를 받아 심사한 후 (교외)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은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(교외)체험학습의 기간 및 횟수는 1일전 신청, 연간 최고 15일까지 허락한다. (재량휴업일, 토요일, 공휴일은 체험학습의 기간에서 제외한다.)</u></p> <p>제15조(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) 본교의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시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입학전형</p>	<p>⑤ <u>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, 동아리 활동, 봉사활동, 진로활동으로 한다(국가교육과정 개정 및 변경에 따라 활동 명칭은 변경될 수 있다).</u></p> <p>⑥ <변동없음></p> <p>제12조(교외체험학습)</p> <p>① ~ ② <변동 없음></p> <p>③ <u>(교외)체험학습의 기간 및 횟수는 7일전 신청하여 연간 최고 15일까지 허용하며, 학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은 취소될 수 있다.</u></p> <p>제15조(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) 본교의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시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입학전형</p>	

규정명 :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칙		비고
현행	제·개정(안)	
<p>가. 서류전형(80점) : 학업계획서, 학력 확인서, 성적 자료 등 선발에 필요한 자료에 의거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 예정자를 선발한다.</p> <p>나. 면접전형(20점) :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 4명이 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이를 합산한다. 면접은 수학 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자와 불응한 자는 서류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다. 점수합산처리 :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. 제출한 일체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인될 때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	<p>가. <u>서류전형(80점): 학업계획서, 학력 확인서, 성적 자료 등 선발에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, 입학전형위원(또는 입학전형위원회로 구성할 수도 있음)이 심의하여 입학 예정자를 선발한다.</u></p> <p>나. <u>면접전형(20점): 본교 입학전형위원(교직원 중 학교장이 지정한 3인 이내)이 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. 면접은 수학 능력과 학교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, 입학전형위원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서류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다. <변동없음></p>	
<p>제37조(학생선도위원회)</p> <p>① <u>본교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설치한다.</u></p> <p>② <u>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, 외부인사(학부모 등)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④ <u>위원은 본교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<u>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u></p>	<p>제37조(학생생활교육위원회)</p> <p>① <u>본교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.</u></p> <p>② <u>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, 필요시 외부인사(학부모 등)을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(단, 학교의 실정에 따라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).</u></p> <p>③ ~ ⑤ <변동 없음></p>	
<p>제40조(학칙개정)</p> <p>① <u>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상위법의 개정과 학교장이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교직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해 개정한다.</u></p> <p>② <u>발의된 조항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의견수렴 및 교무회의에서의 축조심의를 통하여 자구수정 후 최종안을 작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작성된 최종안은 기획위원회의 심의</u></p>	<p>제40조(학칙개정)</p> <p>① ~ ② <변동 없음></p> <p>③ <u>작성된 최종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</u></p>	

규정명 : 장대현중고등학교 학칙		비고
현행	제 · 개정(안)	
<p>를 거쳐 학교장이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.</p> <p>④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학생 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</p>	<p><u>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.</u></p> <p>④ <변동 없음></p>	